

2026년 수성구 임기제공무원(아동보호전담) 임용시험 재공고

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
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8일
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임용예정 직 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근무예정 부 서	직무내용
아동보호 전담요원	한시임기제 8호	1명	임용일로부터 27. 3. 31.까지	수성구청 아동보육과	·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·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·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· 원가정 복귀 등 보호조치 종료 이후 사후관리 · 사례결정위원회 운영

2. 법령근거

- ☐ 지방공무원법
- ☐ 지방공무원 임용령
- 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- 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- 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지침
- ☐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(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)

3. 응시 자격 요건

□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)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관련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
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관련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§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§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
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마. 삭제 <2022. 1. 4.>

바. 삭제 <2022. 1. 4.>

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□ **임용자격 기준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**

- 보건복지부 「아동분야 사업안내」 지침(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)에 따라 아래 임용자격 기준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구분	임용예정직급	임용자격기준
아동보호 전담요원	한시임기제 8호	·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 ·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 [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] ·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기관·시설 등에서 사회복지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,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(예시 : 주 20시간(1일 4시간) 1년 근무 =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)

- 1)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
- 2)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**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- 3)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
- 4) 전일근무(8시간/1일)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, (예시 : 주20시간 근무)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- **근무조건** : 주5일 근무(1일 7시간, 주35시간)
 - ※ 기타 별도 명시하지 않은 복무 관련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의함
- **근무장소** : 수성구청 아동보육과
 - 수성구청 만촌별관(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, 동일빌딩 8층)
- **근무시작예정일** : 2026. 10월 중 ※ 임용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있음
- **보수수준**
 - **한시임기제 8호**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근무시간(주35시간)에 비례하여 책정

구 분	월지급 봉급기준액 (주40시간 기준)	주35시간 적용 시
한시임기제 8호(8급 상당)	2,378,300원	약 2,081,010원

- ※ 연봉 외 급여(각종 수당)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※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제1항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□ 시험일정(예정)

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6. 8. 28.(금) ~ 9. 1.(화) / 3일간	2026. 9. 7.(월)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 게시	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될 경우 별도 통보

□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서류전형 :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 - ※ 서류전형기준 :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,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등
-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
- 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

□ 인성검사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

- ※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※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

□ 2차 시험(면접전형)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 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
 - ※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
 - ※ 면접결과 공개 : 면접자가 요청하는 경우 면접위원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의 평균점수를 공개(요청자 본인의 점수만 공개)
-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
- 적격자가 없을 경우(모두 불합격인 경우) 선발하지 않으며 재공모함

□ 최종합격자 발표

-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접수

□ 응시원서 접수

- 교 부 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포함)을 출력하여 사용
- 접수기간 : 2026. 8. 28.(금) ~ 9. 1.(화), 3일간
09:00 ~ 18:00(중식시간 제외 : 12:00 ~ 13:00)
- 접 수 처 : 수성구청 아동보육과(수성구청 만촌별관 8층)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(반드시 우편봉투 겉면에 “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” 문구 표기)
 - 주소 : 우(42030)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(범어동)
수성구청 만촌별관 아동보육과(동일빌딩, 8층)
- ※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(평일 09:00~18:00)(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)
- ※ 우편접수 시 반드시 도착 여부 유선 확인 바람(☎053-666-4609)
- ※ 우편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7.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② 응시원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 - 응시수수료 : 5,000원(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첨부)
 - ※ 수성구 수입증지 판매처 : 수성구청(본관 1층)내 민원여권과 7번 창구
 - ※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- ③ 이력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 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- ④ 자기소개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- ⑤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 1부
-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 1부
- ⑧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)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 1부
- ⑨ 관련분야 자격증 : 원본 지참, 우편 접수한 경우 면접 시 원본 지참
- 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 -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(별지 제10호 서식) 제출
- ⑪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원본 1부(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)
 - 재직기간, 직위, 담당업무(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)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
 -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(별지 제9호 서식) 추가 제출
 - ※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
 - 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(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)

- ※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※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(징계현황 포함) 제출
 - ※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재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
 - **경력증빙자료(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아래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)**
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 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 -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,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⑫ **경력사실 확인 증명서** 1부(해당자에 한함)(별지 제9호 서식)
- ⑬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 등)

☞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기타(유의)사항

- ☐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☐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 - ※ 최종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☐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- ☐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☐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.
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※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(당초 지원서류로 같음)
-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,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(www.suseong.kr)에 공고합니다.
- 「공무원연금법」 개정 및 시행('18.9.21.)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, 공무원연금의 지급이 중지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성구 아동보육과 아동지원팀(☎053-666-460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직무기술서

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아동보호서비스 업무	지방한시임기제 8호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 수성구	복지국 아동보육과

주요업무	○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-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-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-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- 보호종료 후의 사후관리 -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지원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, 조직이해능력(조직체제이해능력) ○ (직급별 역량)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능력, 기술능력, 상담자 윤리, 컴퓨터활용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판단력(위기사례확인 여부),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기본적인 아동복지 업무 수행 ○ 기본적인 아동 사례관리 업무 수행 ○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
------	---

관련분야 : 아동보호서비스 업무	
응시 자격 요건	자 격 기 준 ○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○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○ 경력요건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기관·시설 등에서 사회복지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,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. (예시 : 1일 4시간 주 20시간 1년 근무 =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)